

의안번호	2215340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6. 1. 22.
추 계 번호	25C7092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(적극적 조치 및 성별 임금공시제)	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고,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은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1. 근로자 채용 인원 수 2. 근로자 및 임원 수 3.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4. 근로자 평균임금 5. 이직자 수 6.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수 7. 「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자 수 8. 「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 9.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0조(적극적 조치 및 성별 임금공시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성별근로공시제도 업무 이관에 따른 조사 근거 마련(안 제20조)

-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·지방공단의 근로자 수,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고, 개정안은 관련 조사 및 공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, 개정안에 따른 조사·취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·운영 등을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- 다만, 성평등가족부는 시범운영과 비교하여 공시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, 공시항목을 체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발생으로 보기 어려워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¹⁾
 - 참고로,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및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제 시범운영을 한국노사발전에 위탁·운영하였고,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

【표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및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제 시범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내용	예산액	비고
2023년	AA-net 사이트 내 성별근로공시제 시범운영 페이지 개발	19,000,000	AA예산 전용하여 집행
2024년	신규 홈페이지 개발	250,000,000	
2025년	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	83,140,230	

자료: 성평등가족부

- 또한, 성평등가족부는 시범운영 이관에 따라 정보이관(22백만원) 및 인프라 운영료(25백만원) 예산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하였음

1)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범위 확대 및 항목 개편, 공시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